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61호
----------	------

2021. 05. 25.

건명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및 제출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05. 17.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연월일	2021. 05. 17.

보 고 내 용

□ 제안이유

-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조문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202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삭제 (안 제3조)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대한 감면 규정 근거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인용 조문 변경(안 제6조)
-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62호
----------	------

2021. 05. 25.

건명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및 제출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05. 17.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연월일	2021. 05. 17.

보 고 내 용

제안이유

-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민세의 세세목명 명칭 변경

지방세법 개정전		지방세법 개정후	
세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세목명	납세의무자
균등분	개인(세대주)	개인분	개인(세대주)
균등분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사업자
균등분	법인사업자		
재산분	사업자		
종업원분	사업자	종업원분	사업자

- 개인분 세율을 1만원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 변경 (논산시 시세 조례 안 제5조)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세법 제1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